

통관제도

제1절 김

1. 통관제도

가. 통관 관련 서류

- ① 인보이스
- ② 패킹리스트
- ③ 보험명세서
- ④ B/L
- ⑤ A/N
- ⑥ 원산지증명서
- ⑦ 성분표/공정도/시험성적서
- ⑧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나. 통관제도 변동사항 및 주의사항

□ 통관제도 변동사항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시안전과에서는 2009년 12월 31자로 기존의 선행 샘플 통관제도를 폐지하고 2010년 1월 1일 부터 본선 통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2010년 1월 1일 부터 실시하는 본선 통관 제도는 본선 컨테이너에 적재 한 화물에서만 직접 검체 채취하도록 운영 방침을 변경하여 후생성의 허가를 받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 한 후 식품 위생법 위반 시 폐기 및 반송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시험성적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1년간 유효하며, 본선 통관 시 시험성적서 제시 후 즉시 통관이 가능한 제도임

□ 통관 시 주의사항

수입 통관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현품의 수량과 금액이 인보이스상의 수량, 금액과 상이한 경우는 통관이 지연되거나 외환 및 외국무역법위반으로 벌칙(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는 것 외, 행정제제(1년 이내의 수입금지)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함. 예로 재래 김의 규격 513cm²(조미김 용)를 전장 김의 규격 430cm²(김밥용 김)으로 오인하여 수입하여 통관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음

□ 개인수입

개인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외국환율 및 외국무역법』 및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면제받음. 개인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량은 건 김의 경우는 1세대 당 월 1,000매 이하로 판단함

다. 수입식품감시지도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식품 안전부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수입식품감시·지도를 위해 매년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모니터링검사

- 검역소는 모니터링계획에 규정된 건수의 검사를 실시
- 생산국가에서 식품의 회수와 건강피해 발생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 모니터링 검사 등에 의해 법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필요에 따라 검사를 더욱 강화

□ 명령검사

-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 후생노동대신이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 시 마다 수입자에 대해 명령검사를 발동함
- 검사명령 이외의 식품도 수입신고 심사 중에라도 검사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특히 2010년부터 식품위생법의 알레르기 표기법에 의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성분이 포함된 원재료(조미 김의 경우, 건조 김에는 새우, 게 등의 갑각류가 혼입 될 가능성이 있음)에 관해서는 반드시 혼입 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도록 의무화 되었음

라. 수입절차

〈수입절차〉

참고사항 구비서류 절차

수입승인 유효기간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 부터 원칙적으로 1년임

[수입승인신청시 구비서류] ①수입승인신청서②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③수입대행계약서(대행시) ④기타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수입계약체결



수입승인(필요시)

신용장개설시 주의사항 ①대금결제방법, 선적항, 도착항의 계약서와의 일치여부②품목, 규격, 단가, 원산지, 가격조건이 계약서와의 일치여부③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이 계약서상의 유효기일 이내이며 선적 기일은 유효기일이내인가 확인④분할 선적과 환적의 허용여부

[신용장개설시 구비서류] ①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②외국환거래 약정서 ③수입승인서(필요시) ④물품매도 확약서⑤기타 필요한 서류 : 담보 제공 증서 등

신용장개설

L/G 발급시 유의사항 ①L/G발급 후엔 도착하는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음.
②일람후 정기출급조건의 기한부 신용장인 경우 기간개시의 기산일이 L/G발급일임(최장 20일 인정)
[발급시 구비서류] ①발급은행소정의 선취 보증서 및 보증서 발행신청서 각1부②선하증권 사본③상업송장 사본④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⑤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각서 등)

선적서류내도 및 대금결제

L/G

수입신고 시기 반입신고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해야 함(기간 경과 시 최고 2%이내의 가산세 부과)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①수입신고서②수입승인서(필요시)③가격신고서(송장 포함)④선하증권 사본
⑤기타 필요서류(C/O, 수입 물품 명세확인서 등)

수입신고

환급신청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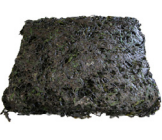
사후관리

마. 관세율

종류	HS CODE	관세율	비고	주요상품
건조김	1212.20-110	1.5엔/1매	장사각형의 종이형태, 430cm ² 이하/1매 이하 해초	건조김
	1212.20-120	40%	1212.20-110 이외 해초	재래김 덩어리김
비가당 조미김	2106.90-298	25%	비가당 조미김	한국풍 조미김
김조제품	2106.90-2-(2)-E	28%	김조제품(구운김을 포함, 비가당 조미김을 제외)	구운김 가당조미김 자반

자료원: 일본관세협회

☐ 유통형태

					
재래김(원초)	덩어리 김	돌김	8절커트 김	자반김	구운김
건조김			비가당조미김	김 조제품(가당)	

2. 검역제도

- 일본에서 김을 수입할 시에는 『외국환율 및 외국무역법』(수입무역관리령)에 의거하여 수입할당제도가 적용되며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음
- 김은 수입할당품목에 지정되어 수입량이 관리되고 있음. 수입할당 및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승인할당신청서 2통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 농수산물실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접수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기 홈페이지참조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import/wariate/suisanbutsuhappyo.htm

가. 수입할당제도 (IQ제도)

- 일본은 자국의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수입상품에 대해서 수입수량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국가별로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 일본국내의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외국외환법 및 외국무역법」을 근거로 특정화물에 대해 수입 가능한 수량 및 금액을 할당하는 수입할당(IQ : Import Quota)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특히,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서 1966년부터 9종(대구, 방어,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건멸치, 꽂치, 가리비, 패주)등에 대한 수입할당과 한국산을 제외한 세계 102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할당 두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음
- 102국산에 대해 방어, 꽂치, 패주, 건 멸치 품목에 대해서는 금액할당제를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2001년 수량할당제로 전환하여 수입어종의 단가상승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에 대해서는 금액할당제를 고수하고 있음. 현재도 1982년 수준과 같은 4,500만 달러만 할당이 되어 있음
- 일본의 수입상사 등에게 할당하고 있으며 우리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당 받은 수입상사(단체)등을 통해서만 수출입 할 수 있음. 경제산업성에서 할당 내용을 발표함

1) 수입할당(IQ)제도 대상품목

특정품목에 대해서 일정기간 내에 수입 가능한 총량(총액)이 정해져 있음.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승인/할당)신청서」 필요서류를 수입 전에 경제산업성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수입할당품목(IQ)에는 아래 20개품이 해당됨

2) 수입할당의 공표

수입무역관리령에 의해 수입관리제도는 경제산업성에 의해 고시되고 있음. 관보, 경제산업공보등에 게재되며 수입할당을 받아야하는 화물의 품목, 수입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화물의 원산지 또는 선적지역의 기타 화물수입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고 있음

3)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제(Import Quota)품목

일본의 수산물 IQ품목은 20개 품목이 있으며(2011.10.26일 현재), 한국은 김 등 13품목에 적용됨

■ 마른 김에 대한 수입할당 (2012년1월20일 발표) ■

HS번호	1212-20-1-(1), 1212-20-1-(2)	
수입할당량	전체	7억98백만장
	상사할당(한국)	2억 7백만장
	상사할당(중국)	2억98백만장
	수요자할당	2억88백만장
	선착순할당	5백만장

■ 비가당 조미김에 대한 수입할당 (12년1월20일 발표) ■

HS번호	2106-90-2-(2)-E-(b)	
수입할당량	전체	4억98백만장
	상사할당(한국)	3억19백만장
	수요자할당	1억72백만장
	선착순할당	7백만장

■ 김조제품(구운김 포함, 비가당 조미김 제외)대한 수입할당 (12년1월20일발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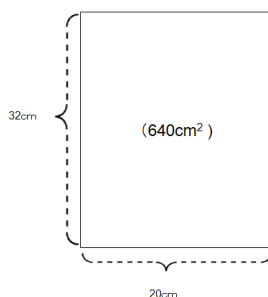
HS번호	2106-90-2-(2)-E	
수입할당량	전체	2억22백만장
	상사할당(한국)	38백만장
	상사할당(한국이외)	114백만장
	수요자할당	67백만장
	선착순할당	3백만장

4) 김 매수 환산방법

수입 할당품목인 김(건조김, 비가당 조미김, 김조제품)은 全形(면적이 430cm^2 이하의 것)을 1장으로 하고 있으며 전형 이상 크기나 또는 裁斷한 것의 전형으로의 환산 방법은 아래와 같음. 또한, 덩어리 형태 등 종이상태가 아닌 경우는 해당 김3g을 전형 1장으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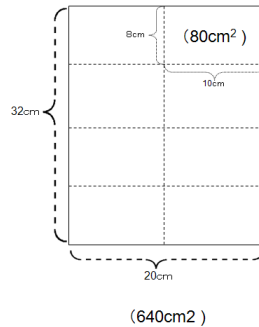
- ① 430cm^2 를 초과하고 전형으로 수입된 것에 대해서는 총면적을 430cm^2 로 나누어 계산하여 환산하고 소수점이하는 반올림 한다.
- ② 전형이 430cm^2 를 초과하는 김이 재단되어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단된 김을 전형 430cm^2 의 범위내에 들어가는 매수(재단된 김 1장면적/ 430cm^2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환산 매수로 한다.

(예1) 전형 640cm^2 를 100세트 수입하는 경우



$$\text{전장}640\text{cm}^2 \times 100\text{매} \div 430\text{cm}^2 = 148.837\text{매} \Rightarrow 149\text{장 (환산매수)}$$

(예2) 전형 640cm²를 8절로 하여 100세트 수입하는 경우



8절중 1매 면적은 80cm²이며

$$430\text{cm}^2 \div 80\text{cm}^2 = 5.375\text{매}$$

430cm²의 범위내에 5매가 들어감(8절 5매를 430cm² 1매로 환산)

$$800\text{매} \div 5\text{매} = 160\text{매} \Rightarrow 160\text{매 (환산매수)}$$

자료원) 경제산업성 농수산실

나. 판매 관련 규제 및 절차

일본에서 김을 판매 시에는 『식품위생법』 『JAS법』 『부당경품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규제를 받음. 기타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식별표시에 대해서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규제를 재상품화에 대해서는 『용기포장 리사이클 법』의 규제를 받을 경우가 있음

1)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해·유통성 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이나 비위생적인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음. 또한 김을 용기포장에 넣어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음

2) JAS법 (농림물자규격화 및 품질표시적정화에 관한 법률)

- JAS법에서는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하는 모든 음식료품이 품질 표시기준의 대상이 됨

- JAS법은 「JAS규격제도」와 「품질표시제도」2가지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JAS규격제도는 일본농림규격(JAS규격)에 의한 등급설정 검사에서 합격한 제품에 JAS마크 부착이 가능하고 제품의 규격화, 유통의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임
- 품질표시제도는 일반소비자가 상품선택시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음식료품을 대상으로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것을 제조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임
- 주류(주세법), 약사법에 규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은 JAS법의 대상에서 제외됨
- 「수산물품질표시기준」 「생선식품품질표시기준」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 「어패류의 명칭가이드라인」 등의 구체적인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표시에 맞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3) 부당경품 및 부당표시방지법

판매하는 상품 등의 내용에 대해서 일반소비자에게 우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대광고나 허위표시등은 부당표시로 금지되어 있음. 또한 상품의 원산국을 판별하는 것이 어려운 표시도 부당표시로 금지되어 있음

※ 김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 동 규약은 소비자의 적정한 상품선택을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에 의거하여 업계의 자주적인 규정으로서 시행되고 있음

3. 표기사항

수산물의 구체적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한 「수산물품질표시기준」 「생선식품품질표시기준」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 「어패류의 명칭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음

가. 수산물 품질표시 기준

수산물 품질에 관해 판매업자가 표시해야 할 사항

- 냉동한 것을 해동 할 경우「해동」이라고 표시한다.
- 양식의 경우 「양식」이라고 표시한다.

나. 생선(生鮮)식품 품질표시 기준

이 기준은 농림수산성에 의해 생선식품의 공통 표시사항의 명칭, 원산지를 표시하고 개별 포장된 경우는 내용량, 판매업자명 및 주소도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1) 표시기준

- ① 원산지 : 자국산 품은 수역 명 또는 지역 명 (양식장이 속한 행정구역명)
- ② 수역 명 표기가 어려운 경우 : 어획한 항명 또는 행정구역명
- ③ 수입품 : 원산국명 (수역 명 병기 가능)
- ④ 해동한 것이나 양식한 것은 반드시 표기가 필요하다
- ⑤ 소매판매업자 : 용기포장의 잘 보이는 곳 또는 제품에 근접한 장소
- ⑥ 도·소매업자 : 용기포장이외에 발송 장 또는 납품 서에 표시해도 무방함

2) 표시방법

해초류 예)다시마류/미역류/김류/파래류/한천원초류/기타해초류

다. 가공식품 품질표시 기준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식품(용기에 넣어 포장된 것에 한함)의 공통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1) 표시기준

명칭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 품명, 종류별 표기도 가능
원재료명	식품첨가물이외의 원재료는 중량순으로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 식품첨가물은 중량순으로 기재
원료원산지명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별 * 별표2에 해당하는 것은 원료원산지를 표기한다
내용량	포장의 중량을 빼고, 내용물의 순중량을 표시한다

상미기한	품질이 급속하게 변화하기 쉬운 경우 소비기한을 기재
보존방법	상온보존의 경우는 생략 가능
제조업자 이름 및 주소	수입품은 수입업자명을 기재한다

* 수입품에 있어서는 「원산국명」을 기입

* 별표2에 해당하는 품목

- ① 건조어패류, 염장어패류, 찌서 말린 어패류 및 다시다, 건조김, 구운김, 기타 건조한 해초류(얇게 채썰거나, 얇게 다진 것 또는 분말형태는 제외)
- ② 염장어패류 및 염장해초류
- ③ 조미한 어패류 및 해초류 (가열조리 및 조리냉동식품에 해당하는 통조림, 병조림 및 레토르트파우치식품은 제외)
- ④ 다시다말이
- ⑤ 데치거나 삶은 어패류 및 해초류(통조림, 병조림 및 레토르트파우치 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⑥ 표면을 그슬린 어패류
- ⑦ 후라이로서 튀김옷을 입힌 어패류(가열조리 및 조리 냉동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⑧ 생선(生鮮)식품을 이중 혼합한 것(절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섞어 담은 것은 제외)

2) 표시방법

- ① 용기 또는 포장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 ② 표시에 사용되는 문자는 8포인트 이상 통일된 문자를 사용한다.
- ③ 표시면적(라벨면적이 아닌 포장면적중 표시가능한 모든 면적)이 150평방센치미터 이하로 5.5포인트에서 7.5포인트로 표시가능
- ④ 표시면적이 30평방센치미터 이하 원재료 등 생략이 가능하다.

⑤ 일괄표시 예

아래 표와 같은 순으로 일괄표시하며 면적이 좁은 경우 분할하여 표시가 가능

명 칭	○○○○○○
원 재 료 명	○○○○,○○○,○○○○,○○○
원료원산지명	○○○○○
내 용 량	○○○g
고 형 량	○○○g
내 용 총 량	○○○g
상 미 기 한	평성○○년○○월○일
보 존 방 법	○○○○○○○○
원 산 국 명	○○○○○
제 조 자	○○○○○○○○○○○○○

□ 김 라벨링표시 예

- 품 명 : 전형 구운김 블루
- 명 칭 : 구운김
- 원재료명 : 마른 김(치바현산)
- 내 용 량 : 전형 10장들이
- 상미기한 : 하기에 기재
- 보존방법 :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고 개봉후에는 냉장고에서 보존하십시오
- 제 조 자 : 주식회사 마고코로 잇큐야
- 주 소 : 치바현 핫츠시 가와나 1481-2
- 영양성분표 전형 10장(30g) 당

에 너 지	56.40kcal
단 백 질	12.42g
지 질	1.11g
탄수화물	13.29g
나 트 른	159mg
비타민B12	17μl



○ 조미김 수입시 표시방법 및 사례

표시사항		상세 설명
名称/(명칭)	味付けのり / 조미김	이전에는 상품명 또는 품명으로 기재되어도 무방했으나 JAS법에 의거해 名称(식품의유형)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되었다.
原材料名/(원재료명)	乾のり(韓国産), コーン油, 食塩 / 건조김(한국산), 옥수수기름, 식염	원재료명은 실제 제품이 완성 되었을 때 함유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하도록 한다. 원재료명에 원산지를 기재하였을 경우 별도로 원산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内容量/(내용량)	板のり3,375枚分 (8切9枚3P)/ 전형김 3,375매분 (8절 9매 3P)	한국김 원초(재래김)의 경우 190mm x 270mm (1장/9절)기준, 1팩당 9장이 들어간 경우 일본김 원초 190*210mm(1장/8절)과 사이즈가 같다고 계산한다. 즉, 9장/8절*3팩이 들어가서 일본김3,375장분의 김이 들어갔다는 것을 명시한다.
賞味期限/유통기한	枠外右側及び個装袋に記載 우측 및 개포장에 기재	유통기한의 경우 기재 장소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保存方法/보존방법	直射日光・高温多湿を避け、なるべく冷暗所に保存して下さい	보존 방법을 표시한다.
原産国/원산국	韓国 한국	원산지를 표시한다.
輸入者/수입자	美味しいノリ株式会社 東京都新宿区大久保1-1-1 TEL: 03-3333-5555	수입자/판매자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包材の材質/포장재질	外袋: PP(ポリプロピレン) 内袋: PP(ポリプロピレン), PE(ポリエチレン), PET(ペット), M(アルミ箔) トレー: PET(ペット)	내포장/외포장/용기에 관한 재질을 성분함유율에 따라 반드시 순서대로 기재해야한다. 재활용마크는 반드시 지정된 마크를 사용해야한다.

표시사항	상세 설명
ご注意 / 주의 ※本製品で使用している乾のりは、甲殻類(えび・かに等)が混ざる養殖法で採取しております。 ※ 本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조김은 갑각류(새우, 게 등)이 섞이는 양식법으로 채취하고 있다.	알레르기표기법에 의해 2010년부터 새우, 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원재료의 경우, 반드시 혼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 乾燥剤入り / 방습제 유.무	방습제가 들어간 경우 반드시 표시한다.
※ お客様サービス係	소비자 서비스를 위한 연락처 등을 표시

【ご注意】

※ 開封後はお早めに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

※ 本製品で使用している乾のりは甲殻類(えび・かに等)が混ざる養殖法で採取しております。

※ 製法上、形がふぞろいだったり、穴や縮みがありますが、品質には問題ありません。

※ 本商品は、油を使用しておりますので、油漬が生じる場合がありますが、品質上問題はありません。

家族会館韓国のり3P

名 称	味のり
原材料名	乾のり(韓国産)、コーン油、ごま油、食塩
内 容 量	板のり3.375枚分(8切9枚3P)
賞味期限	枠外右側および個装袋に記載
保存方法	直射日光・高温多湿を避け、なるべく冷暗所に保存してください。
製 造 者	株式会社シン・インターナショナル 〒340-0808 埼玉県八潮市緑町1-32-6

※本商品は、韓国産の海苔に日本で味付けをしたものです。

＜伝統的のりとは＞

日本の全産海苔よりも少し大きめの、味も香りもよい海苔に、ごま油や塩で味付をする伝統的な製法で作る海苔のことです。

味付けにもう一度焼き上げたことにより、より一層の風味や香ばしさをお楽しみいただけます。

商品には万全を期しておりますが、お気付きの点がございましたらお手数ですが、下記お客様サービス係までご連絡下さい。

お客様サービス係
フリーダイヤル ☎0120-306-730

「包装の材質」
●外袋：PE (ポリプロピレン)
●内袋：PE (ポリプロピレン)
PE (ポリプロピレン)
PET (ペット)、M(アルミ箔)
●トレイ：PET(ペット)



※ 밑줄 친 부분이 2010년부터 새우와 게에 대한 알레르기 표시사항

□ 라벨링 규정 위반시 조치

- 품질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JAS법 제19조의 14의 규정에 근거해 농림수산대신, 농림수산성 지방농정국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판매자등에 대해서 표시사항을 표시하고 또는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할 취지를 지시하도록 되어 있음
-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농림수산대신이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을 명령하게 되며 그 명령에 위반했을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법인에 대해서는 1억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

□ 조미김 표시사항 위반 사례

조미김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제7조 4항 부당표시의 금지에 의해 자주 적발되는 표시 위반 사례로는 상품명에 『돌김』 등과 같이 기재하여 마치 해당 식품의 원재료가 암초 등에 자생하는 돌김을 사용하였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식품의 원재료로 돌김이 사용되지 않고 양식 김이 사용된 경우가 있어 원재료로 양식 김을 사용할 경우는 돌김이라고 표시는 위반사항임

4.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 농림수산물성 <http://www.maff.go.jp>
 소비안전국(수산물자원보호법) Tel : 03-3502-8111(대)
 수산청자원관리부연안종합과 Tel : 03-3502-7768
- JSA규격
 (사)일본농림규격협회 <http://www.jasnet.or.jp> Tel : 03-3249-7120
 (사)일본냉동식품검사협회 <http://www.jffic.or.jp> Tel : 03-3438-1411
 농림수산물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http://www.maff.go.jp/j/jas/hyoji/kigen.html>
- 식품기한표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http://www.maff.go.jp/j/jas/hyoji/pdf/guideline_a_2.pdf
- 품질표시기준 일람 http://www.maff.go.jp/j/jas/hyoji/kijun_itiran.html
- 후생노동성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기준심사와 <http://www.mhlw.go.jp/>
- 수입식품감시 업무 홈페이지
<http://www.mhlw.go.jp/topics/yunyu/tp0130-1.html>
- 식품위생법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기획정보과
<http://www.mhlw.go.jp> Tel : 03-5253-1111(대)
- 식품위생법 제26조 제3항에 근거한 검사명령에 관한 별도지시 (2011년)
<http://www.mhlw.go.jp/topics/yunyu/kensa/2011/02.html>
- 관세법. 관세정율법. 관세임의소치법 관세
<http://www.customs.go.jp> Tel : 03-3529-0700
- 수입발표에 관한 문의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import/wariate/suisanbutsuhappyo.htm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농수산물(수산물)
 Tel : 03-3501-1511 내선 3261